기타 주요정보 및 이슈

미국, 중국산 소형트럭용타이어 대량 리콜

미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는 06년 두 번의 차량사고의 원인이었던 중국산 소형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대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동 리콜대상 타이어의 안전상 중대결함에 대한 중국의 타이어 제조사와 미국의 공급업체간의 법적 분쟁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미국 국내법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리콜책임이 부과되었으나 문제는 동 공급업체가 리콜조치를 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파산할 경우 리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중국산타이어 리콜 사태는 최근 중국산 장난감 납 검출, 중국산 치약 유해물질 발견 등에 이어 일어난 것으로, 미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최근 미국 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 보이콧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NHTSA가 리콜 명령을 내린 대상 타이어는 중국 항주중책고무유한공사(杭州中策橡膠有限公司; Hangzhou Zhongce Rubber Co.)가 제조하고 미국 뉴 저지주 유니온 소재 Foreign Tire Sales Inc가 미국 내로 수입한 타이어로서, 동 타이어로 인해 지난해 5월 뉴멕시코주에서 앰뷸런스 교통사고와 8월에 필라델피아주에서 화물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5월 사고 발생 후 FTS 미국 공급사가 각종 실험을 통해 차량 안전에 필수적인 일종의 접착 테이프인 "gum strip"이 동 문제 타이어에는 부족하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8월 사망사고 이후에는 원고측 소송변호인이 당시 사고의 원인으로 타이어 트레드 파열(tread separation)을 주장하면서 차량제조사인 GM 및 타이어제조사와 타이어공급사를 공동 고소하였다. FTS 공급사는 사고피해자로부터 피소를 당한 후에, 07.5월 중국 제조사를 연방법원에 고소하였으며 07.6월에는 NHTSA에 타이어 결함을 신고하였다. 한편 중국 2대 타이어제조업체인 HZR은 문제 타이어에 대한 안전성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법정고소 및 NHTSA으로의 신고가 모두 미국 공급업체의 기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우 미국법과는 달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품 리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NHTSA는 미국 국내법에 의거 공급업체가 모든 불량을 파악하고 불량품 전량을 리콜해야 할 책임이 있

다고 판단하고 미국 내 전량 교체용 타이어로 유통되는 문제 타이어 45만개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FTS 공급업체는 리콜에 소요되는 예상비용 6~8억달러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 부도가 날 경우 리콜은 사실상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급업체가 즉시 전량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600만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아직 책임소재가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요 언론 매체는 비중있는 기사로 다루고 있으며, 미 상원에서는 불량 타이어 수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주문하는 등 이번 일을 계기로 작게는 중국산 타이어, 크게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강화로 이어질 조짐이다.

이번 사태로 중국산 타이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우리 타이어 제조업체도 유사사태 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성 유지 관련 품질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 KOTRA 워싱턴무역관 07.6.26일, 미국 「Tire Business」 07.7.2일자〉

TPMS 관련법 관련 이의제기, 백지화

05년 6월, 미국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관련 법제 시행과 관련하여, 4개 타이어조사 – 굿이어,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 북미사, 쿠퍼, 피렐리타이어 북미사 – 로 구성된 컨소시엄, TIA(미국타이어공업협회) 그리고 Public Citizen (미국 시민단체)이 원고가 되어 미 교통부와 NHTSA(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를 상대로 TPMS 관련 법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콜럼비아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 소송은 거의 2년이 지난 올 2.16일에 심문회를 거쳐, 마침내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측은 확정된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15일 미국 콜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의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패널은 4개 주요 타이어사와 TIA는 헌법 제 3조에 따라 NHTSA의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확정안에 이의를 제기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으며, 다만 두 명의 재판관은 소비자 단체인 Public Citizen에 관해서는 그 지위의 적합여부 판결을 위해 보충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고 다른 한명의 재판관은 Public Citizen 마저도 그 자격에 있어서는 부적격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소송제기가 백지화 되면서, 타이어업계와 소비자 단체 원고측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 원고측이 취할 수 있는 행동방안으로는 기존 세 명의 재판관 패널의 동결정에 대한 재고 요청, 전체 11명의 재판관 패널의 전면 검토 요청, 미국 연방대법원에의 직접 항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법제화된 TPMS 기준에 있어, NHTSA의 25%의 공기압 부족 기준치와 주행 후 TPMS 작동시간 20분 기준치의 부적합성을 크게 지적하고 각각 최소 20% 공기압과 10분 이내의 작동 기준치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자료 : 미국 「Rubber & Plastics News」 07.6.25일자〉